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 예정이었던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기불황 및 차량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3년간 50% 경감하여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,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.(안 제15조의 4 신설)

4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196조의5(과세표준과 세율) 및 부칙<법률 제6060호, 1999.12.28> 제5조(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)
-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
- 경상북도 재정과-15625(2004.12.22)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(경상북도)의
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임.

- 따라서,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,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%를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